



러시아 납세자의 역외 재산 및 소득 등에 관한 특례

최근 러시아는 OECD 국제 규범상 통용되는 조세 피난처 등 역외 지역에서의 경제 활동에 대한 관리와 과세권을 강화하기 위한 러시아 국내법의 보완 프로그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인 납세거주자(Tax resident, 국적 불문)가 세무당국에 미신고한 역외국가에 소유한 재산 및 은행 계좌 등에 대해 올 연말까지 자발적으로 신고할 경우 일체의 유관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한 ‘개인의 역외 재산 및 은행계좌에 대한 자발적 신고 특별법’(이하, 개인역외사면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연방세법의 개정을 통해 관리대상 해외기업(КИК)에 관한 특별 규정(일명, 조세 환수법)을 신설하고 납세자가 해외 기업에 출자한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 국제 기관(FATF)등과의 공조를 통한 회원국간의 정보 교류와 역외지역의 자금 세탁 등에 대한 관리와 처벌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 개인역외사면제도

개인역외사면법에 따라 201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동법 제5조)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역외 재산과 은행계좌(명의신탁 포함), 지배인으로 있는 외국회사의 정보 등을 관할 세무서에 자발적으로 신고한 개인에 대해서는 2015년 1월 1일 이전까지 신고한 내용의 취득, 사용 및 처분 과정에서 관련 러시아 법률의 위반에 따른 모든 조세, 행정, 형사 처벌의 면제를 보장하고 있습니다.(동법 제4조 13항)

- 신고인: 러시아 국적자, 외국인, 무국적자(동법 제2조 1항 1))
- 신고 대상 재산: 신고인 본인 명의 및 명의 신탁한 해외 부동산, 운송수단(차량, 선박, 항공기 등), 해외 유가증권, 외국 회사의 주식 및 지분 등
- 신고 대상 계좌: 신고인 본인 명의 및 명의 신탁한 해외은행계좌
- 신고 대상 기업정보: 신고인이 실질적 지배인으로 있는 외국회사

▶ 관리대상 외국기업의 조세 환수제도

지난 5월 22일 러시아 하원은 러연방 세법의 ‘관리대상 외국기업과 외국기관의 수익금에 관한 과세 부분’ 개정 및 신설안을 승인하였습니다.

관리대상 외국기업은 러시아 납세거주자(Tax resident)가 당 외국기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당 외국기업의 실질적인 수익자로 판단된 경우에는 러시아 당국에서는 당 외국기업을 관리대상 외국기업으로 지정하고, 당 외국기업의 수익금은 러시아 납세거주자가 가지는 지분의 비율에 따른 수익금에 대해 러시아 소득세(법인 20%, 개인 13%)를 부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실제 많은 역외지역 국가의 경우 러시아와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약상 배당 세율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러시아 납세거주자가 조세 포탈의 목적으로 역외기업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외국기업의 지분을 10%이상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 납세거주자는 관할세무서에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세법 23조 3-1항, 25.14조) 이를 위반할 경우 미납세에 대한 누진세의 부과뿐만 아니라, 미신고 기업이 관리대상 외국기업인 경우 미신고 기업 1개당 100,000루블의 행정벌금, 단순 지분참여 외국기업을 미신고한 경우 1개 기업당 50,000루블의 행정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리대상 외국기업이 러시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자신의 지배자와 실질적 수익자에 관한 정보를 러시아 세무당국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한 러시아 재산세의 100% 가산세가 벌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산가치의 50% 이상이 러시아 소재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외국기업의 경우 당 기업의 주식(지분)을 양도할 경우 러시아 세무당국에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베벨라예프 그룹 한국팀(Korean Desk)의 Comment

역외지역과 관련한 러시아 사업의 유형은 크게 1)역외국가에 있는 모회사(SPC)를 통해 러시아 자회사를 관리하는 형태, 2) 러시아내 모회사가 역외국가에 있는 자회사(SPC)를 활용하는 형태, 그리고 3)역외국가에 재산을 도피시키는 형태가 있습니다.

러시아 세무 당국에서는 1)의 경우 역외국가에 있는 모회사와 러시아 자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목적으로 움직일 경우 러시아 자회사를 고정사업장으로 판단하여 과세하고, 2)의 경우에는 역외 기업을 관리대상 외국기업으로 세무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하며, 3)의 경우에는 이번 특별법으로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과세권이 실질적인 경제활동에 부합하게 역외지역까지 미칠 수 있도록 한 조세권 강화 프로그램입니다. 주의를 요하는 부분은 법률상 2)의 경우와 3)의 경우 신고인으로 러시아국적자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납세거주자 지위를 갖고 있는 외국인과 무국적자도 포함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2)의 경우는 의무적 신고 사항이며 미신고에 따른 처벌도 있습니다.

그간 대러 투자 외국기업들 가운데 다수가 역외 지역의 SPC를 통한 러시아 사업이 조세적 측면이나 EXIT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가 사실입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정책방향이 OECD의 모델을 도입하면서 역외기업에까지 러시아 조세권이 미치도록 하고 있고, 반면 러시아내 투자자에 대해서는 각종 특구제도(경제특구, 선도특구, 극동자유항 등)를 통한 다양한 투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역외국가를 경유한 간접적 투자 방식의 실익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Pepeliaev Group 소개 및 Contact details

법무법인 “뻬뻬랴예프 그룹”은 국제평가기관 CHAMBERS GLOBAL, CHAMBERS EUROPE, LEGAL 500, WTR, IFLR 등 으로부터 매년 러시아 최고 로펌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모스크바(본사), 상트-뻬제르부르크, 크라스노야르스크, 블라디보스톡(R&V 공동), 사할린(R&V 공동) 등 러시아 5개 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약 200여명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는 러시아 최대 법무법인입니다. 동시에 대표변호사 직속으로 한국팀 (Korean Desk)을 설치하여 한국기업들을 위해 각종 국제계약, 러시아 투자, 국제분쟁의 해결 등을 위한 최상의 러시아 법률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팀(Korean Desk)은 한국기업의 러시아 진출과 현지 사업을 돕고자 한국기업이 관심 가져야 할 최신 러시아 법률과 판례 동향에 관한 국문 Legal alert를 발행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Legal alert의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저희가 발행하는 Legal alert를 정기적으로 받아 보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정노중 한국팀장/파트너변호사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 details

정 노 중



한국팀장/파트너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모스크바시 변호사회 소속(2006-현)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2012-2014)
 모스크바 Bar Exam 외국인 최초 합격(2006)
 성균관대학교 법대 졸업(90학번)
 T.: +7 495 967 0007(Ext.387)
 +82 10 6411 5737 (Seoul)
 E.: nc.cheong@pgplaw.ru

Egor Lysenko



크라스노야르스크 분사무소 소장
 변호사/회계사
 크라스노야르스크대학교 법학과/회계학과/경제학과 복수전공 졸업
 T.: +7 (391) 277 73 00
 E.: e.lysenko@pgplaw.ru

Petr Popov



변호사
 모스크바대학교 법학과 졸업
 T.: +7 495 967 0007
 E.: P.popov@pgplaw.ru

본 Legal alert는 한국기업에 필요한 러시아 법률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발행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저희 법무법인의 공식적인 법률의견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